

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상호(사업자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의 평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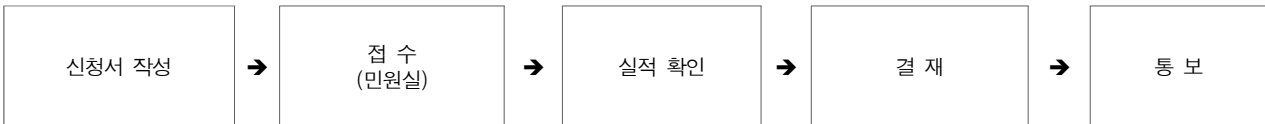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
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.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.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처 리 기 관 : 유역(지방)환경청장(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)